

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
			20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법 인	명칭	전화번호	
	소재지		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설립발기인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) 1부	수수료 없음
	2.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	
	3. 재산목록(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)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(出捐)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
	4.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	
	5.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·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	
	6. 창립총회 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사본 1부	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국민권익위원회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 소관 부서)